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5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박지혜 · 최민희 · 위성곤
허영 · 안도걸 · 권향엽
박정현 · 최혁진 · 이주희
이병진 · 박지원 · 이재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검증 절차, 기록·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연료를 말한다”를 각각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항공유에 대하여 지속가능항공유(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항공연료를 말한다)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비율, 적용대상, 혼합의무의 이행절차 및 방법 등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합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또는 설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점검 결과 혼합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 등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의4(지속가능항공유의 지속가능성 검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원료·제조공정·배출저감효과 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의 검증 기준·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한 자료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혼합의무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 ----- ----- ----- ----- -----연료를 말한다. <u>이하 같다</u> ----- -----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4조의3(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항공유에 대하여 지속가능항공유(바이오연료</u>

·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항공연료를 말한다)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비율, 적용대상, 혼합의무의 이행절차 및 방법 등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합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또는 설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점검 결과 혼합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신 설>

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대
해서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의4(지속가능항공유의 지
속가능성 검증 등) ① 산업통
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원료·제
조공정·배출저감효과 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검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의 검증 기준·
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검
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
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출한 자료 중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혼합의무자로부터 검증수수료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u>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u> <u>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u>
--	--